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81,533,667	32,446,010
일반회계	988,551,435	29,656,543
특별회계	92,982,232	2,789,467
공기업특별회계	83,744,518	2,512,336
상수도사업	38,607,839	1,158,235
하수도사업	45,136,679	1,354,100
기타특별회계	9,237,714	277,131
의료급여기금	2,688,880	80,66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79,100	8,373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59,518	7,786
수질개선관리	4,825,658	144,770
공공폐수처리시설	1,184,558	35,53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765,391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7,1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